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사지원과) 02-970-6033

제정	2012. 3. 1.	개정	2012. 3. 23.	개정	2012.	9. 28	3.
개정	2013. 9. 1.	개정	2016. 9. 1.	개정	2016.	10. 1	14.
개정	2016. 11. 17.	개정	2017. 6. 20.	학칙개	정 2017	⁷ . 7.	3.
개정	2019. 3. 21.	개정	2019. 10. 7.	개정	2020.	9.	4.
개정	2021. 6. 1.	개정	2022. 4. 28.	개정	2022.	9.	1.
개정	2023. 5.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1.) 제2조(강의의 구분과 정의) 대학의 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실험, 실습, 실기 및 임상실습 등의 지도와 시범을 특수강의라 한다.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평상수업을 보통강의라 한다.
- 3. 국내외의 저명인사 및 명예교수에 의한 수업을 특별강의라 한다.
- 4. 책임강의시간 이외의 수업을 초과강의라 한다.(개정 2013. 9. 1)
- 5. 본교 전임교원 이외의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시간강의라 한다.
- 6. 수강인원이 51명 이상인 수업을 대단위강의라 한다.
- 7. 영어로 강의하는 수업을 영어강의라 한다.

- 8. 제7호의 영어강의 중에서 국제교류처장이 학문 계열별로 편성·관리하는 수업을 영어모듈강좌라 한다.
- 제3조(교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① 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9시간으로 하고, 해당학기 책임강의시간 미달 교원은 반드시 다음학기 책임강의시간에 해당학기 책임강의 미달시간을 가산하여 준수해야 한다. 다만, 계절학기및 디스커버리학기에 개설한 강좌는 책임강의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3. 9. 1, 2017. 6. 20., 2019. 3. 21., 2021. 6. 1.)
 - ② 책임강의시간 미달교원이 다음 학기에도 이를 보충하지 않고 미달되었을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3. 21.)
 - ③ 교원의 소속에 따른 책임강의시간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0., 2019. 3. 21.)
 - 1. 대학 전임교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강의한 시간을 모두 인정하되, 대학원에서 강의한 시간(논문 및 세미나 과목 제외) 및 계약학과에서 강의한 시간은 각각 3시간까지 인정. 다만, 대학원에서 논문 과목을 강의한 시간은 1년에 3시간까지추가 인정
 - 2. 대학원 전임교원: 대학 및 대학원(논문 및 세미나 과목 제외)에서 강의한 시간을 모두 인정하되, 계약학과에서 강의한 시간은 3시간까지 인정. 다만, 대학원에서 논문 과목을 강의한 시간은 1년에 3시간까지 추가 인정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교수의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소속을 구분하지 않고 책임강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2. 4. 28.)
 - ⑤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 6. 20, 2019. 3. 21,

2019. 10. 7.)

- 1. 초과강사료는 전임교원의 실제 강의 시간수가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강의 시간 수(계약학과 강의 시간 수는 6시간 범위에서 인정)에 따라 지급한다.
- 2. 강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간 수를 합산하여 강사료를 지급한다.
 - 가. 실제로 강의한 시간
 - 나.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시간
 - 다. 종강 후 성적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다만, 폐강된 강좌는 강사료 산정에서 제외
- 3. 영어모듈강좌에 대해서 총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4. 특별강사료는 총장의 위촉에 따라 특별강의를 담당한 사람에게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
- ⑥ 개교기념일, 국경일 또는 국가적 행사로 인하여 휴강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 강을 실시한 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 6. 20, 2019. 3. 21.)

제4조(강사료의 계산) 강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평상수업에 따른 보통강의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특수강의는 2시간을 1시간으로 산정하여 강사료를 계산한다. 다만, 영어의 Lab, 예·체능 실기는 보통강의 시간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다.
- 3. 동일 강좌를 2인 이상의 교원이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교원 개인별로 실제로 담당하는 총 시간수를 주당 평균 시간수로 산정하여 강의시간 수에 반영한

다.

- 4. 대단위 강의에 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한다.
- 제5조(보직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 ① 주요 보직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별표2]와 같으며, 그 이외 교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 9. 1, 2016. 9.
 - 1, 2016. 10. 14, 2016. 11. 17, 2017. 6. 20, 2017. 7. 3, 2019. 10. 7, 2020. 9. 4.)
 - 1. (삭제 2020. 9. 4.)
 - 2. (삭제 2020. 9. 4.)
 - 3. (삭제 2020. 9. 4.)
 - 4. (삭제 2020. 9. 4.)
 - 5. (삭제 2020. 9. 4.)
 - 6. (삭제 2020. 9. 4.)
- ② 보직교원의 임기가 학기 중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의 잔여기간까지 제 1항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연장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강사료는 제3조의 주 당 책임강의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9. 10. 7.)
- 제5조의2(신규 임용 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 ① 신규 임용 교원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은 6시간으로 하며,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에는 초과할 수 있다.(신설 2016. 10. 14. 개정 2020. 9. 4.)
- ②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임용 후 2개 학기까지로 한다.(신설 2020. 9. 4.)
- 제5조의3(기타 사유에 따른 책임시간 감면) 출산휴가 등으로 강의를 담당할 수 없는 여성 전임교원은 당해 한 학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책임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료는 제3조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3. 5. 12.)
- 제6조(강의시간의 제한) ① 교원의 학기당 강의 시간은 다음 각호의 시간 이내

- 로 제한한다. (개정 2022. 9. 1.)
- 1. 전임: 책임강의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9시간까지 (개정 2022. 9. 1.)
- 2. 겸임 및 초빙: 주당 9시간까지(외국인 초빙교원은 예외)
- 3. 강사 및 명예·석좌 등: 주당 6시간 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담당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1.)
- 제7조(강사료 지급 기준액 및 대상) 시간당 강사료의 지급 기준액 및 대상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강사료 지급일) ① 강사료는 월별 기준 강의시수에 따라 당월분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해당 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하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담당 교원의 신분변동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강사료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11. 17.)
 - ② 강사료 지급에 따른 월별 기준 강의시수는 [별표3]과 같다. (신설 2016. 11. 17.)(개정 2022. 4. 28.)

부칙(제3호, 201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호, 2012. 3.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143호, 2012. 9.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8호, 2013. 9.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0호, 2016. 9. 1)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7호, 2016.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는 2017년 1월 1일자 신규 임용 교원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53호, 2016. 1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376호, 2017. 6. 20.)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79호, 2017. 7.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70호, 2019. 3. 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4호, 2019. 10. 7.)

이 규정은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60호, 2020.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별표2]에서 보직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613호, 2021.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82호, 2022. 4. 28.)

이 규정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06호, 2022.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8호, 2023. 5.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019. 3. 21, 개정 2020. 9. 4.)

책임강의시간 미달 전임교원 제재 기준

□ 책임강의시간 미달 산출 방법

○ 교원별 연간 책임강의시간 대비 실제 강의시간을 다음 연도(4. 1. 기준)에 확인 하여 책임강의시간 미달시간을 산출. 다만, 다음 연도 1학기(4. 1. 기준)에 미달시간에 해당하는 강좌를 추가 개설한 경우에는 책임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가주

책임강의시간 미달시간 = 주당 책임강의시간 - 주당 강의시간

□ 책임시간 미달교원 제재 기준

○ 책임강의시간 미달교원이 기한 내 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 수 등에 따라 제재조치. 단, 임용 1년 이내의 교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

제 재 조 치 기 준	제재 처분
책임강의시간 미달시수 4시간 이상 9시간 이하	주의
책임강의시간 미달시수 10시간 이상	경고
연속하여 주의 2회, 통산 3회 주의 조치 시	경고
연속하여 경고 2회, 통산 3회 경고 조치 시	징계

^{※ 5}년을 초과한 처분은 순차적으로 소멸

□ 책임시간 미달에 따른 제재 처분에 의한 혜택 제한

76	혜택 제한				
구분	항목	기간			
주의	승진	교원인사규정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한			
	정년보장	교원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한			
	겸직허가	교원인사규정 제49조제3호에 따라 제한			
	승진	교원인사규정 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제한			
경고	정년보장	교원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한			
	겸직허가	교원인사규정 제49조제3호에 따라 제한			
	교내 연구비 지원, 연구장려금 지원,				
	국외파견, 연구년, 교육·연구 및 학	1년			
	생지도비 중 학생지도영역				
	승진	교원인사규정 제29조제1항제9호 따라 제한			
	정년보장	교원인사규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한			
징계	겸직허가	교원인사규정 제49조제3호에 따라 제한			
	교내 연구비 지원, 연구장려금 지원,				
	국외파견, 연구년, 교육·연구 및 학	처분기간 + 1년			
	생지도비 중 학생지도영역				

보직교원별 책임강의 시간

□ 보직교원 등의 주당 책임강의 시간

보 직 명	보직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
부총장	2
일반대학원장	2
학장	3
행정부서장 및 전략부서장	3
교수평의회 및 대학평의회 의장	3
부처장, 교수평의회 부의장	4
부속/지원시설 부서장 I	4
특수 및 전문대학원장	5
부속/지원시설 부서장Ⅱ 및 부부서장, 교수평의회 사무처장	5
학과(부)장	7
학부 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 연계전공 주임교수, 계약학과장 또는 계약 학과 주임교수	7
일반산업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주임교수 (계약학과 및 비정규과정은 제외)	7
전문대학원 주임교수	6
교양대학 학부장(인문사회교양학부, 자연과학부, 융합교양학부), 공학인증 책임교수, 건축학인증 책임교수	7
철도아카데미 책임교수	8

□ 총 책임시간 면제 제한 기준

○ 보직교원, 학과(부)장 등 겸직 교원의 책임시간 면제는 면제시수가 가장 높은 하나를 적용함. 단, 면제시수가 3학점이 안 될 경우 추가 보직에서 합산 가능함.(합 산 가능 최대 면제학점은 3학점으로 함)

□ 보직명(대상직위) 현황

보 직 명	대 상 직 위
행정부서장 및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 국제교류처장, 교육혁신처장,
전략부서장	미래전략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부처장	교무부처장, 학사부처장, 학생부처장, 기획부처장, 연구부처장, 산학부처장, 입학
	부처장, 국제교류부처장 교육혁신부처장 , 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부속/지원시설	도서관장, 정보전산원장, 홍보실장, 생활관장, 공동실험실습관장, 대외협력본
부서장 I	부장, 대학원혁신본부장, 신문방송사 주간, 창업지원단장, 취업진로본부장
부속/지원시설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1 ' '' '	교양교육연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미술관장, 인권센터장, ST나눔공헌단장,
부서장표 및	철도아카데미 원장, 창업보육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부부서장	취업부본부장, 진로부본부장, 대학원혁신본부 부본부장, 창업지원단 부단장

강사료 지급일 및 월별 기준 강의시수

학기	수업 해당월	강사료 지급일	지급 강의시수	비고
1학기	2월~3월	4월 5일	5주	- 대단위 강의료 정산
	4월	5월 5일	4주	
	5월	6월 5일	4주	
	6월	7월 5일	2주	- 결·보강 등 정산 - 강의계획 수립 및 성적처리 시간 정산 (강사에 한함)
2학기	9월	10월 5일	4주	
	10월	11월 5일	4주	- 대단위 강의료 정산
	11월	12월 5일	4주	
	12월	별도 지정 (12월말일까지)	3주	- 결·보강 등 정산 - 강의계획 수립 및 성적처리 시간 정산 (강사에 한함)